

조 례 안 검 토 보 고

- ① 거창군 마을공동시설물 관리조례안
- ②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
- ③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④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1. 21.
- 나. 제출자 : 이 수 정 의원 외
- 다. 회부일자 : 2005. 12. 2.
- 라. 의안번호 : 2005 ~ 83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우리 군에서는 자연마을 단위로 정부지원 또는 주민자력으로 마을회관이나 쉼터 등의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나 보수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경로당 보일러 등 시설이 낡아 교체 또는 보수를 해야 할 경우 적기에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를 마을회관, 경로당등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의 관리책임은 이장으로 함(안 제3조).
- 군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지도감독과 유지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대상자 선정은 3월말까지 확정하여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마을단위로 지원 및 자력으로 만들어진 회관, 경로당, 놀이터 등 공동으로 이용 하는 시설물이 많으나, 관리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하여 파손된 경우 등 보수의 필요성이 있으나, 적기에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거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주민부담을 들어주고 계획적으로 관리 하여 공동이용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보수비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나.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의견

-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은 마을회관등 대부분의 공동이용 시설 물에 대해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했으며.
- 안 제3조에서 시설물 관리책임을 이장에게 두어 소홀해지기 쉬운 공동이용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정함.
- 안 제4조는 군수가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게 정한 것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안 제5조 사업비 지원은 소규모 사업(1천만원)을 대상으로 함.
- 안 제6조는 매년 3월까지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 지급토록 함.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규정을 두어 타 보 조금과 형평성을 갖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동 조례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5조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1. 21.
- 나. 제출자 : 조 선 제 의원 외
- 다. 회부일자 : 2005. 12. 2.
- 라. 의안번호 : 2005 ~ 84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농기계의 발전과 확대 공급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수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농기계의 피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정신적 재산상의 손실이 극심하고 이로 인하여 농업소득의 안정적 보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 농기계 사고와 농기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 사고 등 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은 모든 농기계로 사고로 인한 농업인 안전보험과 수해나 화재 등 농기계의 멸실로 인한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을 대상으로 함(안 제3조)
- 지원 범위는 군비 지원액이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총 지원액이 1농가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 보조금의 신청은 보험 가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농기계의 발전과 각종농기계의 공급 확대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 향상에는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농기계 운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수해나 화재 등 재해와 고가의 농기계 도난에 따른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정신적 및 재산상의 손실이 극심한 실정이라 이들 피해에 대한 보장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어려운 우리농촌 현실에서 가입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떨어져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상해 보험료 등을 군비로 일정비율 지원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여준 후 보험 가입을 권장해 가입률을 높여 농민이 농기계 사고와 농기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나마 들게 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함이 필요한 실정임.

나.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의견

- 안 제1조 목적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을 신체상의 상해 및 재해 등에 따른 농기계 피해에 한정하도록 분명히 규정한 것은 범위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보험사를 정해 무질서한 보험가입을 없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는 농업재해 관련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재정적 부담 등으로 가입이 저조한 것을 보험금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면서 가입을 권장할 수 있게 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짐.
- 안 제4조의 지원대상을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군내 모든 농업인으로 하여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 안 제5조의 지원범위는 농민이 부담한 보험료의 80% 이내에

및 농가당 1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한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됨.

- 안 제6조에서 지원금의 신청은 영수증(보험증권)만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행규칙을 둘 수 있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정 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한 사항으로 여겨짐.
- 동 조례 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5조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11. 21.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5. 11. 21.

라. 의안번호 : 2005 ~ 65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04. 7. 30. 대통령령 제18504호)됨에 따라, 합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설치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 함(안 제1안 및 제2안)
- 세입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이월금 및 기타수입으로 함(안 제3조)
-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함(안 제4조)
- 이월금 및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안 제5조)
- 금고설치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토록 함(안 제6조)
-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관리토록 함(안 제7조)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준용(안 제8조)

3.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2004년 7월 30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합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나.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의견

- 안 제3조 세입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과 이월금 및 기타수입으로 규정 함.
- 안 제4조에서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정한사업의 사업비등으로 정함.
- 안 제5조의 이월금 및 집행잔액 사용은 다음연도에 이월사용 및 집행잔액을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 금고의 설치는 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토록 함.
- 안 제8조에서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함.
- 동 조례 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및 제 44조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5조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1.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11. 21.
- 라. 의안번호 : 제2005 ~ 67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거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5년 7월 1일 개정되어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및 당연직 위원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함.
-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위원 중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변경하고, 산림환경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추가 지정함(안 제2조)

3.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당연직위원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이 변경되어 지므로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과 재난과 관련이 높은 실과소장을 추가하여 재난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함.

나.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의견

- 안 제2조(구 성)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13명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17명으로 확대하여 군청에서 재난과 관련이 많은 실과소장을 추가한 것은 재난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라 판단되나, 재난 시 이재민 과 부상자등 인명피해 발생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및 보건소장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 동 조례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4.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1.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11. 21.
- 라. 의안번호 : 제2005 - 68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 인위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에서 재난의 종류 등을 규정하였음(안 제2조)
- 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기간 및 임부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농작물 피해신고를 읍·면장에게 하고 조사는 관계공무원이 신고인 입회하에 실시토록 규정함 (안 제4조).
- 보상금지급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안 제5조).
-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출하가격의 70%를 기준으로 함(안 제6조).

- 보상금 지급절차는 현장조사 후 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후 청구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함 (안 제7조).
- 법령상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 경작 및 농외소득이 60% 이상일 경우 보상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안 제8조).
- 인명피해에 대한신고는 14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관계공무원이 조사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위원수를 9명 이내로 조정하고, 군의원, 농업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 (안 제14조).
-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16조).

3.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종전에 적용되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 4.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군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의 구성·운영과 각종 재난위험 및 발생시 상황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나.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의견

- 조례안을 만들면서 6장 33개조로 상세히 정하여 다양한 재난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1장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 안 제1장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2조(정의)는 자연재난 등 8호까지 두었으며.
- 안 제2장에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을 4개조로 구분

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대책본부 운영기간을 자연 및 인적 재난대책기간 과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그 밖에 필요시 등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간을 정하였음,

○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와 본부장 유고시 직무대행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게 하였음.

○ 안 제3장은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5개조로 정하여 운영 시 문제점을 줄일 수 있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됨.

- 재난대비체제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계를 정함(안 제7조).

1. 자연·인적재난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

2. 기반재난은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

-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대처계획 협의 등 을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 각종재난에 따라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 및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과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복무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내지 11조)

○ 안 제4장은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관리체계 등 12개조로 편성하였음.

- 본부장은 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현장상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현장상황지휘관을 임명, 재난이 예견되는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기반재난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및 신속한 수습을 위해 도 대책 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정함(안 제14조).
 - 현장상황지원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로 지원팀을 구성, 현장 또는 도 수습지원팀에 지원하게 함(안 제 15조)
 -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조체제 및 통신망을 구축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제16 및 17조)
 - 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장비동원과 자원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갖추어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18조 내지 20조)
 -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고, 개인별 행동편람을 만들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 22조).
 -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시기, 방법, 서식을 정해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 안 제5장은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반재난에 대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8개 조로 별도 정한 것임.
- 기반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재난상황 전파요령을 정함(안 제24 및 25조)
 - 군수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하여 정보수집·분석 및 전파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재난을 각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상황관리 및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급한 상황에서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임(안 제27조 내지 제30조).
- 안 제6장 보칙은 본부장이 합동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안 제31조), 재난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게 정한 것은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됨(안 제32조).
- 동 제정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04. 03. 11. 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2004. 05. 29. 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2004. 06. 12. 제정)